

울산지방법원 2022. 7. 5 선고 2021가단347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5. 24.

판 결 선 고 2022. 7. 5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 D에게 각 33,634,118원, 선정자 E(이하 ‘원고들’이라고 한다)에게 11,211,374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2015. 4.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B'이라 한다)의 명의로 매수하되,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그 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,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. 4. 21.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, D은 각 150평, 원고 E은 50평(이하 '이 사건 원고들 매수부분'이라 한다)을 1평당 700,000원으로 계산하여 각 매수하기로 약정(이하 '이 사건 매수약정'이라 한다)하였다.

다. 이 사건 매수약정에 따라 2015. 4. 21.부터 2015. 5. 14.까지 사이에 원고 A, D은 각 105,000,000원, 원고 E은 35,000,000원을 이 사건 원고들 매수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.

라. 피고들은 2015. 4. 22. 이 사건 부동산을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, 같은 해 5. 15.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, 2017. 6. 22. 원고 D에게, 2017. 7. 5. 원고 A에게, 2017. 7. 31. 원고 E에게 각 이 사건 원고들 매수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평당 가격은 475,634원인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평당 70만 원이라고 매수가격을 기망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78,479,61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편취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78,479,610원을 편취하였다거나,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이형석

선 정 자 명 단

- 1. A
 - 2. D
 - 3. E
- 끝.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울산광역시 남구 F 입야 2,529㎡
2. G 입야 2,975㎡
3. H 입야 2,975㎡. 끝

